#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이동통신 데이터 제공 계약서

**갑:** 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 ○○, 대표이사: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을:** 베타AI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길 ○○, 대표이사: 김영희, 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갑")와 베타AI 주식회사(이하 "을")는 갑이 보유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로그 데이터의 제공과 을의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하여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로그 데이터(이하 "제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이하 "AI 모델")을 개발 및 상용화함에 따른 제반 조건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제2조 (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식)

① **제공데이터의 범위:** 갑은 을에게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로그에서 추출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제공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통화 및 문자 이용량,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앱/서비스 이용 내역, 위치 정보 등 **AI 모델 개발에 합의된 범위 내의 비식별화된 사용자 로그 정보**를 포함한다. 제공데이터에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가명처리 또는 익명화하여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② **제공 방식 및 주기:** 갑은 제공데이터를 **월 단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제공 일정과 빈도는 별도 합의된 **데이터 제공 일정표**에 따른다. 데이터 전달은 암호화된 파일 전송, 보안 API 이용 등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갑은 데이터 제공 시 관련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 전송한다. 을은 데이터를 수령할 전용 서버나 저장소의 접속 권한을 갑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갑은 해당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③ **데이터 품질 및 변경:** 갑은 제공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공하며,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을에게 통지하고 정정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제공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추가,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으로 을의 AI 모델 개발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갑은 최소 30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 대책을 협의하도록 한다.

④ **배타적 데이터 제공:**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의 데이터셋**을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모델 개발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갑 내부의 연구·개발 목적이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을과 동종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의 데이터 거래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을에게 부여되는 데이터 활용의 사실상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갑은 가급적 을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⑤ **소유권 불변 및 사용권 부여:** 제공데이터 및 그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획득할 뿐이다. 을은 제공데이터를 본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갖고, 그 외의 권리는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한 모두 갑에게 유보된다.

## 제3조 (데이터 이용 및 처리 제한)

① **목적 외 이용 금지:** 을은 제공데이터를 오직 **AI 모델의 개발 및 상용화**라는 본 계약상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하며, 이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제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을은 제공데이터를 재판매하거나 임의의 방식으로 영리 목적으로 직접 활용할 수 없고, 오로지 AI 모델 개발 및 그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식별 금지:** 을은 제공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복원하려 시도해서는 안 되며,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분석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제공데이터에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식별자를 별도로 분리·암호화하거나 삭제하여,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취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을은 제공데이터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령 준수 및 허용 범위:** 을은 제공데이터의 이용 및 AI 모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제공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가명정보**에 해당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을은 같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보호조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한다. 을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신고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④ **최소한의 이용 원칙:** 을은 제공데이터를 **본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근·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한 범위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으며, 데이터 접근 권한 또한 을의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부여한다. 을은 제공데이터를 취급하는 임직원이나 담당자에게 본 계약의 제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내부 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결합 데이터 사용:** 을이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자체 보유한 데이터나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제공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합 데이터의 활용이 본 계약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을은 결합하려는 제3자의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이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만약 해당 데이터의 이용에 별도 제한이나 조건이 있을 경우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을은 제3자 데이터와 제공데이터의 결합으로 인해 갑의 제공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식별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권리 비취득 확인:** 을은 제공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한 지식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데이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사용권 부여**에 한정되며, 을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여 AI 모델이나 통계 자료 등을 생성하더라도, **제공데이터 원본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2차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제공데이터의 일부를 식별할 수 없게 **집계된 통계나 인사이트** 등의 결과는 본 계약에 따른 AI 모델의 기능 구현 또는 보고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위법·부당 이용 금지:** 을은 제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한 목적(예: 차별, 신용평가 등 본 계약과 무관한 프로파일링)에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AI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도 윤리적 AI 가이드라인 및 관련 업계의 권고를 존중하여 편향된 결과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을의 데이터 활용이 규제 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

## 제4조 (데이터 보안 및 관리)

① **보안 조치 의무:** 을은 제공데이터의 저장, 처리, 관리 전반에 걸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소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접근 통제:** 제공데이터는 내부에서 권한이 부여된 인원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 통제를 시행한다.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권한 적정성을 점검한다.  
(나) **데이터 암호화:** 제공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때에는 강력한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암호화 저장한다. 암호화 키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  
(다) **물리적 보안:**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나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IDC 센터 또는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보안 정책을 준수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갑이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만 사용하고, 국내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네트워크 보안:** 외부로부터의 해킹 및 침입을 막기 위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IPS), 안티바이러스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적용한다. 데이터 전송 시 TLS/SSL 등 암호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마)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데이터 접근 및 이용 내역에 관한 로그를 생성·보관하며, 이상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로그는 최소 계약 기간 동안 및 종료 후 1년간 보관하여 추후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종업원 기밀 유지:** 제공데이터를 취급하는 을의 모든 임직원 및 관련 담당자는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퇴직 후에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② **보안 사고 통지:** 을은 데이터 유출, 해킹, 분실, 무단 접근 시도 등 **보안 사고 또는 사고 징후를 인지한 경우**, 즉시 (늦어도 24시간 이내) 갑에게 통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사고 발생 일시, 경위, 영향을 받은 데이터의 내용과 범위, 을이 취한 또는 취할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은 사고 수습을 위해 갑 또는 관계 기관과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 시 추가로 요구되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③ **보안 점검 및 감사:** 갑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을의 제공데이터 관리 및 보안 실태를 점검하거나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보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감사 일시와 범위를 통지하고, 을의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정당한 감사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보안 상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취한다. 갑은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료 보관 및 분리:** 을은 제공데이터를 다른 일반 데이터와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용 저장 공간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공데이터가 저장된 시스템에는 본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여 외부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개발용 데이터와 운영용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원시 데이터는 즉시 폐기하거나 안전한 형태로 저장장소를 별도로 분리한다.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공데이터의 성격상 대량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을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등을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갑의 요청 시 공유하며, 갑은 필요한 추가 보호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⑥ **보안조치 미준수에 대한 책임:** 을이 본 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공데이터의 **유출, 훼손, 무단 공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고 제3자로부터 갑이 부담하게 된 책임이나 벌과금(예: 감독기관의 과징금,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전액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와 별도로 제9조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제5조 (지식재산권 및 파생산출물의 귀속)

① **제공데이터에 대한 권리:** 제공데이터 및 그로부터 직접 도출된 2차 자료(예: 필터링이나 단순 가공을 거친 데이터 집합 등, 이하 "파생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언제나 갑에게 있다. 을은 제공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통해 어떠한 독자적인 권리도 취득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따른 이용권만을 가진다. 을이 생성한 파생데이터 중 원본 제공데이터의 개별 항목을 복원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파생데이터는 갑의 요청에 따라 제공데이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을은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AI 모델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을이 제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AI 모델과 이에 부수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 모델, 기술 문서 등의 모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을에게 귀속**된다. 다만,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성된 AI 모델 등 개발 결과물이 **제공데이터에 직접 의존**하여 도출된 경우, 을은 해당 결과물을 상용화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예: 성과보수 지급, 비밀유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그러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기하는 데이터 활용상 우려나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상용화 권리 및 제한:**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귀속된 AI 모델 및 개발 결과물을 **상용화**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을이 해당 모델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솔루션 판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을은 그러한 상용화 과정에서 **제공데이터의 원본 또는 그 유사한 데이터를 역추론**할 수 있는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선 안 되며, 서비스 결과로 제공되는 정보는 개별 이용자를 식별하거나 갑의 영업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을이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의 출력이 갑의 개별 고객에 대한 평가나 프로파일 등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해당 출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④ **갑의 활용 권리:** 갑은 을이 개발한 AI 모델 및 그 파생 결과물을 향후 **갑의 내부 업무 또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을과 **별도 협의**하여 해당 결과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을은 갑의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조건**(예: 라이선스 사용료, 기술지원 범위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며, 갑이 해당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하거나 자체 활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단, 별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갑은 임의로 을의 AI 모델을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갑이 본 계약 기간 동안 AI 모델 개발에 기술적 조언이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여 **공동의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개발 결과물의 일부에 대한 공동 소유 또는 공동 상용화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다.

⑤ **제공데이터의 반환 제한:** 을이 개발 결과물을 완성하고 상용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결과물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제공데이터)** 자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은 제공데이터를 모델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를 구축할 권리를 얻는 것이며, 모델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원본 제공데이터를 계속 보유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공데이터는 계약 종료 시 제8조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을은 계약 기간 중에도 본 계약에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제공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⑥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을은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활용한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갑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당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을은 AI 모델의 산출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

## 제6조 (대가 및 지급 조건)

① **기본 이용료:** 을은 제공데이터 이용의 대가로 갑에게 **정기 이용료**를 지급한다. 정기 이용료는 월 **[금액]원**으로 하며(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최초 이용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이후 매월 말일마다 익월분 이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한다. 정기 이용료 금액은 데이터 제공 범위나 서비스 확장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성과기반 추가보수:** 을이 제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AI 모델 또는 그를 이용한 서비스를 **상용화**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성과보수**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성과보수는 을이 해당 AI 모델 또는 관련 서비스의 상용화를 통해 거둔 **총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X]%**로 한다.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을이 제3자에게 AI 모델 자체를 라이선싱하거나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현금 수입을 말하며, 만약 제3자와의 계약이 패키지 형태로 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는 AI 모델에 기인하는 매출 비중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성과보수는 **분기별로 정산**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③ **성과 정산 및 검증:** 을은 매 분기 말 현재 본 계약과 관련된 AI 모델 상용화 매출 현황을 **성실하게 집계**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해당 기간의 관련 매출액 산정 내역과 이에 따른 성과보수 금액 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갑은 필요 시 을의 회계 기록을 검토하거나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검증 결과 보고된 매출액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성과보수가 적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을은 부족분 성과보수를 즉시 지급하고, 축소분이 5% 이상인 경우 검증 비용도 부담한다.

④ **초기 착수금:** 을은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준비 및 초기 협력의 대가로, 계약 체결 후 **[금액]원**을 갑에게 일회성 **착수금**으로 지급한다. 이 착수금은 데이터 추출·가공 등의 초기 비용 보전 목적이며, 정기 이용료와 별개로 지급된다. 착수금 지급일 및 조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착수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추후 성과보수 산정 시 비용 공제로 참작되지 않는다.

⑤ **부가세 및 세금:**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 을은 갑에게 지급 시 해당 금액에 대한민국의 법정 부가가치세율(현재 10%)을 적용한 부가세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갑은 대금 지급일에 맞추어 법적 요건을 갖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필요한 경우)를 을에게 발행한다. 각 당사자는 해당 금액 수령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세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원천징수 등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⑥ **지급 방법:**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계약에 따른 금액을 송금하여 지급한다.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은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한다.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 등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⑦ **지급 지연에 따른 조치:** 을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 6%는 단순 이율로 1년을 365일로 산정하여 1일 단위 연체료 계산). 지급 지연이 30일을 초과하면 갑은 별도의 최고 없이도 데이터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갑은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해지와 별도로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완납하여야 하며, 갑이 입은 추가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⑧ **비용 부담 및 기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예: 데이터 가공 설비 투자, 시스템 개발비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별도로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을 진행하거나 을이 갑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나 주문서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계약 기간 및 해지)

①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자동 갱신은 매회 최대 [○]년차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예시: 최초 계약기간 2년, 최대 2회 자동 연장 가능 등)

② **당사자의 임의해지(정기 해지):** 최초 계약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편의에 의한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90일 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일까지 각 당사자의 기득권(발생한 이용료, 성과보수 지급 청구권 등)은 존속되며, 해지 통지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본 계약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③ **즉시 해지 사유(계약 위반):** 한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급 불이행:**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대가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2. **무단 이용:** 을이 제공데이터를 본 계약상의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갑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비밀 유지 위반:** 어느 당사자가 제10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제공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지식재산권 침해:** 을의 AI 모델 또는 그 상용화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을이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거나 갑에게 **현저한 손해나 법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협력 의무 위반:** 당사자 중 일방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본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협조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기타 중대한 불신 사유:**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 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이 이루어졌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을의 지배권 변경(예: 합병이나 주식양도 등)으로 인해 **을이 갑의 경쟁 업체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시정 기간 부여:** 전 항의 1, 2, 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해지에 앞서 **상대방에게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단, 3, 6호의 경우 신뢰관계 훼손으로 시정 기간 없이 해지 가능). 시정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증빙하여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정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간 경과와 동시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법령상 제한 및 불가항력에 따른 해지:** 만약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정부 정책의 시행 등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데이터 제공 또는 활용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대체 방안을 협의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간 내(30일 등)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되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호 서면 동의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하지 못하나, 해지일까지 이미 발생한 채무(예: 미납 이용료, 기 발행된 송장 대금)는 여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⑥ **해지 절차:**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 등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메일(상대방이 사전에 지정한 주소)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지 통지 효력은 통지서에 기재된 해지일에 발생하며, 별도 기재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며,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및 자료 처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 제8조 (계약 종료 후 후속 조치)

① **데이터의 반환·폐기:** 본 계약이 기간 만료, 해지 기타 어떤 이유로 종료된 경우, **을은 즉시** 갑이 제공한 모든 제공데이터 및 그 사본(복제본)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은 제공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영구 폐기**하여야 한다. 반환 시에는 갑이 지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폐기의 경우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지털 데이터의 영구 삭제, 출력물 파쇄 등)으로 수행한다. 을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데이터 반환·폐기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으면 제3자의 확인(예: 전문 폐기업체 증명) 자료를 제공한다.

② **모델 및 파생물의 처리:**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AI 모델 및 그 파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 **성과보수 지속:** 비록 계약은 종료되었더라도, 을이 계약 기간 중 개발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종료 후에도 매출을 창출하는 경우, 을은 해당 모델로 인한 매출에 대해 **제6조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 의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AI 모델이나 파생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며, 지급 방식은 계약 기간 중과 동일하게 분기별 보고 및 정산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후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성과보수율이나 계산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예: 시장 상황 변화나 서비스 성격 변화에 따라).  
- **데이터 미사용 보장:** 계약 종료 후 을은 더 이상 **새로운 제공데이터**를 받을 수 없으며, AI 모델의 업데이트나 개선을 위해 갑의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없다. 을은 종료 시점까지 보유하던 제공데이터를 모두 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이미 개발 완료된 AI 모델**의 기계 학습 파라미터 및 구조 자체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모델에 잔존하는 형태로라도 갑의 원본 데이터가 식별 가능하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을은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값만 남도록 처리하여 원본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이선스 협의:** 갑은 계약 종료 후 을의 AI 모델에 대한 자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을과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모델이나 기술의 사용 권한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본 계약 종료와 별개로 협의 사항이며, 계약 종료 자체가 갑에게 자동으로 해당 모델에 대한 사용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가 미리 향후 공동 활용이나 라이선싱에 대해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장비 및 접근 권한 철회:** 계약 종료에 따라, 갑은 을에게 부여했던 데이터 접근 권한(예: API 토큰, 시스템 계정 등)을 **즉시 철회**할 수 있다. 을은 종료일 이후에는 갑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잔여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을이 보유한 관련 계정 정보나 암호화 키 등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갑은 필요 시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고, 을에게 해당 조치 사실을 통지한다.

④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제10조의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특히 제공데이터 및 AI 모델과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제10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관한 보호 의무 역시 계약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이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

⑤ **손해배상 및 책임:** 계약 종료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약벌 청구, 미지급 대금 청구 등은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종료 후에도 해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갑의 귀책으로 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위약 시 조치(모델 사용 중단 등):** 을이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갑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을이 개발한 AI 모델 및 파생 결과물의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해당 모델의 외부 제공을 중단하고, 을이 내부적으로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중지한다. 또한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을에게 모델 파일 및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기술적인 가능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 갑이 모델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을은 해당 모델에 대한 정당한 **시장 가치 평가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갑으로부터 제공받고 모델을 양도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본 항은 극히 예외적인 구제 조치로서, 실제 시행 시 당사자 간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⑦ **협의에 의한 후속 조치:** 계약 종료 시점에 당사자는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선의로 협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의 성과가 유의미하여 추가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개발**이나 **매출 공유** 등의 구도를 재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이전(transfer)이나 인력의 이동 등이 필요하다면 상호 협조한다. 이와 같은 협의는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며, 계약 종료 자체가 자동으로 향후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제9조 (위약 및 손해배상)

① **일반 손해배상:**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보증 사항이 사실과 달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입증 가능한 통상손해 및 신뢰이익의 상실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예상치 못한 특별 손해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영업이익 상실**이나 데이터 가치 하락 등 추정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할 의무가 없다.

② **위약벌(.penalty):**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데이터 이용 제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금 **[위약벌 금액]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 금액은 을이 1년간 지급해야 할 기본 이용료 총액의 2배 또는 위반으로 인해 추정되는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위약벌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갑은 위약벌 청구와 별개로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위약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③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한 책임:** 을의 제공데이터 오용, 관리 소홀 또는 AI 모델 상용화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 규제당국 또는 기타 제3자**가 갑에 대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벌금,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법률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을의 과실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감독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용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 일체를 보상한다. 반대로, 갑의 귀책으로 을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손해배상 절차:**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 및 입증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무상 제공, 향후 대금에서 공제** 등의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례로,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이 향후 을에게 지급할 성과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off-set)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통해 상계 조건을 정한다.

⑤ **책임의 한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손해배상액(위약벌 제외)의 한도를 **직전 12개월간 을이 갑에게 지급한 총 대가(정기 이용료 + 성과보수)** 범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  
- 을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 을이 제공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상업화한 경우 또는 갑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러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상 책임을 진다.

⑥ **즉시 금지 및 구제 조치:**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의 제공데이터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영업비밀 침해** 위험이 초래된 경우, 갑은 법원에 **즉각적인 금지명령이나 가처분 등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즉시 따르고 위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갑이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⑦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날(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당사자가 사전에 이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거나 제3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① **비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당사자 일방(공개자)**이 본 계약의 협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수령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기술상·경영상·재무상 또는 기타 사업상 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비밀정보에는 제공데이터(갑의 이용자 로그 데이터 일체)와 갑 또는 을의 **고객 정보,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기술 알고리즘, 소스코드, 모델 구조, 연구개발 자료, 계약 조건 및 가격** 등 문서나 구두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전달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단, 아래 ②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된다.

② **비밀정보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공개 정보:** 제공받은 시점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  
2. **자체 보유 정보:**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로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며, 그 정보에 대해 제공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경우.  
3. **독자 입수 정보:** 수령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입수한 정보(단, 그 제3자가 제공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취득·제공한 것에 한함).  
4. **독립 개발 정보:** 수령자가 제공자의 비밀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로서 그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5. **법령상 공개 요구 정보:**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어 수령자가 부득이 공개한 정보. 이 경우 수령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즉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조한다.

③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령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수령자의 계열사 및 이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협력업체 제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제공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우, 수령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기 회사 내에서도 **알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본 조와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서약서를 받거나 내부 규정을 통해 강제해야 한다.

④ **비밀유지 기간:**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제공데이터와 같이 개인정보 또는 개인 관련 행태정보에 해당하는 비밀정보나, 상대방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에 해당)**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한 계속**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더 긴 비밀유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예: 통신비밀 보호 관련 자료 등)에는 그에 따른다.

⑤ **비밀정보의 관리:** 수령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별도의 보안 폴더 또는 파일에 보관하고 일반 정보와 혼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의 비밀정보는 접근 암호 설정, 출력/복사 제한 등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며, 물리적 문서 형태의 비밀정보는 잠금이 가능한 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또한 비밀정보에 접근한 모든 이들의 목록이나 기록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령자는 자사의 비밀정보 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한다.

⑥ **비밀정보의 반환·파기:** 상대방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각 당사자(수령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 및 그 복사본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전자 파일 형태의 비밀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고 복구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인쇄물이나 기록매체는 분쇄 또는 소각한다. 수령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동 백업 시스템 등에 의해 즉각 삭제가 곤란한 경우, 수령자는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고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만 비밀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보관 자료에 대해서는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 적용된다.

⑦ **공개 시 사전 협의:** 어떠한 경우라도,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언론 보도자료, 사례 발표, 레퍼런스 등에 공개하거나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 임직원이나 법률/재무 자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자문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의 수행 실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예: “국내 유수의 통신사와 데이터 활용 AI 개발 협력” 등의 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범위).

⑧ **위반 시 책임:** 어느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누설되거나 부정 사용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울러, 상대방은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위하여 법원에 가처분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 (제3자 활용 및 권리양도 제한)

① **재위탁 및 하도급:**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AI 모델 개발을 위하여 **제3자(협력업체, 자문회사 등)**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제공데이터의 접근·처리를 허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은 동의를 함에 있어 필요 시 해당 제3자의 신원, 역할, 보안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서면으로 부담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을은 위탁 받은 제3자가 의무를 위반할 시, 이를 자신의 위반 행위와 동일하게 책임진다.

② **제공데이터의 제3자 제공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데이터 또는 파생데이터를 양도, 대여, 공유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을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위탁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공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을이 개발한 AI 모델의 **최종 산출 결과**를 서비스 형태로 제3자(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제3자가 결과를 통해 원본 제공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복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을이 제3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AI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에 제공데이터의 역추론이나 부당 사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갑은 동의에 앞서 을의 양도 상대방의 신용, 기술력,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권리·의무의 이전이 가능하다.  
1. **계열사 이전:** 갑이 제공데이터 관련 사업 부문을 **갑의 계열회사**에 이전하거나, 갑의 계열사가 본 계약상 갑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를 재배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새로운 주체도 기존 갑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을 보장해야 한다.  
2. **사업 양도 및 합병:** 갑 또는 을이 제3자와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단,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제3자가 **갑의 경쟁업체**인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조③항 6호 참조).  
3. **담보 제공:** 을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전청구권(예: 향후 받을 성과보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담보권자가 채권을 실제 실행(양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고 준수할 것을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④ **계열사 및 협력사 활용:** 갑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계열사나 계약된 협력사**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수집·전처리·전송 등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의 시스템 운영을 대행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데이터 추출 작업을 진행하거나, 갑의 그룹 내 데이터 전문 조직이 을과 협업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나 조직은 갑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을 통해 비밀유지 및 보안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을은 이들을 갑의 내부 인력에 준하여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만약 을이 합리적인 근거로 해당 제3자의 참여에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그 우려를 고려하여 대체 인력 투입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⑤ **제3자 권리 관계 부담 배제:**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장비, 데이터 등이 제3자의 권리나 라이선스 조건에 구속되어 있음을 이유로 갑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의무를 지우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을이 AI 모델 개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그 라이선스 조항에 의해 추후 모델 공개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러한 의무가 갑에게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오픈소스 사용을 피하거나 별도 상용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 사유:** 당사자 일방이 천재지변, 화재, 폭발, 홍수,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전쟁, 폭동, 테러, 전국적인 파업, 전염병의 전국적 유행(Pandemic) 등 **사회적 재난**, 정부의 법령 또는 규제의 제정·개정,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를 본 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한다.

② **통지 의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당사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불가항력 사유의 내용, 발생 일시, 예상 영향, 예상 지속 기간, 해당 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 상태 동안 당사자는 **상호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정상적인 계약 이행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의무 이행의 일시 정지:** 불가항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해당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못하며,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 이행 기간이나 데이터 제공 일정 등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정지 기간 중에도 이행이 가능한 부분(예: 데이터 처리 가능 범위 내 일부 작업)은 최대한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④ **장기화 시 계약해지:** 불가항력 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7조⑤항에서 정한 경우 포함). 이 경우 본 계약의 종료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가 아니다. 따라서 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은 청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제공데이터의 반환·폐기 등 제8조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 해지로 인하여 을의 AI 모델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기지급된 이용료나 착수금의 정산, 산출물의 처리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⑤ **법령 변경의 특칙:**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데이터 제공이나 AI 모델 활용에 본질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예: 특정 로그 데이터의 외부 제공이 전면 금지됨),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 ②항 및 ④항의 절차에 따라 대처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법령 준수 범위 내에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수정 계약을 협의한다.

⑥ **불가항력 범위 제한:**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재무적 능력 부족** 등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을의 내부 서버 관리 소홀로 인한 시스템 다운, 갑의 자금난으로 인한 데이터 제공 지연 등은 불가항력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계약 위반으로 처리된다.

##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다만, 국제사법 등의 규정에 의해 타국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 실체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우선 협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우선 **선의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과 만나거나 통신 수단을 통해 성실히 논의하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필요 시 양 당사자의 임원급 협의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칠 수 있다.

③ **조정 및 중재 (선택적):** 당사자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중재합의를 작성하고,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중재지와 절차, 중재인 선정 등은 그 때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함)

④ **관할 합의:** 위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최종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단, 당사자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적절히 관할법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본 계약서와 양 당사자 간 교신,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⑤ **가처분 등 긴급구제:** 한편, 제9조⑥항에 따라 갑이 을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처분 등 **긴급구제조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별도의 협의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분쟁 해결의 최종 판단이 아니며,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⑥ **손해배상과 비용:** 분쟁 해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이나 판결에 의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성과보수 또는 기타 금원의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 해당 금액과 함께 **합리적인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각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이나 중재 단계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제14조 (기타 조항)

①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 양해각서, 협상 결과 등은 본 계약으로 대체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한 부속서, 추가 계약, 각서 등이 있는 경우, 본 계약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만일 부속 문서와 본 계약 본문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특별약정이 일반약정에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해석하되, 그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상호 양립 가능한 한도로 적용한다.

② **계약서의 수정:** 본 계약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메일을 통한 합의도 상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서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떠한 구두의 변경이나 일방의 통지는 공식적인 계약 수정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경미한 실무 사항(연락 담당자 변경 등)은 이메일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분리가능성(Severability):** 본 계약의 어느 한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효로 된 조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래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체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관습에 따른다.

④ **권리 포기의 금지:**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분의 권리 행사가 있더라도 다른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한 당사자의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권리 포기는 그 사안에만 적용되고 다른 위반이나 사안에 확장되지 않는다.

⑤ **계약상의 지위:**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상호 간에 **고용, 조인트벤처, 대리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을 및 을의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갑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아니며, 을은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자체 비용과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한다. 을은 갑을 대신하여 제3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⑥ **통지:** 본 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모든 통지 또는 서류는 **서면** 형태여야 하며, 직접 교부,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팩스 또는 합의된 전자적 전송수단(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최신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송달된다. 우편의 경우 발송 후 3영업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메일의 경우 상대방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 후 수신 확인 회신이 있거나 24시간 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신속히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⑦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서 원본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팩스나 PDF 등 전자적 형태로 서명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후 원본 서명을 교환할 수 있으며, 원본 교환 전이라도 전자 서명본에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계약서에 사용된 조항 제목, 목차 등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법적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⑧ **언어:** 본 계약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어 본문을 **정본(official)**으로 한다. 한국어 해석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법률 용어의 의미와 상관습을 참고한다.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본을 병기할 수 있으나, 해석상 불일치 시 한국어판이 우선한다.)

이상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은 신의에 따라 정당하게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 날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2025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p>

<table style="width: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50%;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top;"> 갑: 케이텔레콤 주식회사<br> 대표이사 **홍길동** <br><br> (서명 또는 직인) </td> <td style="width:50%;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top;"> 을: 베타AI 주식회사<br> 대표이사 **김영희** <br><br> (서명 또는 직인) </td> </tr> </table>